

## XR센터 규정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성결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XR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업무)**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확장현실을 기반으로 한 선진기술 교육에 관한 사항
2. 정부와 기업 연계를 통해 컨소시엄 기반 기업 기술고도화 및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
3. XR(EXTENDED REALITY)기술 전문인력 엑셀러레이팅 교육, 단기 집중형 트레이닝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한 교육취업 및 지도자 양성에 관한 사항
4. 그 외에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

**제3조 (적용범위)**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,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4조 (조직)** ① 센터의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를 통괄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두며, 필요한 경우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교원 중에서 책임자를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 센터장의 유고, 또는 센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총장은 임기 내의 경우에도 센터장을 교체할 수 있다.

④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를 위하여 연구원, 직원을 둘 수 있다.

**제5조 (운영위원회)**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
**제6조 (자문위원)**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은 총장이 추천할 수 있다.

③ 센터장이 자문위원을 추천할 경우 총장의 재가를 득한다.

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
**제7조 (재정과 회계)** ① 센터의 재정은 교비, 국고지원금과 그 밖의 지원금 등으로 충당

## XR센터 규정(4-14-1)

---

한다.

② 센터의 회계는 본 대학교의 예산회계 규정에 따른다. 다만 정부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협약에 의한 자금집행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.

**제8조 (운영세칙 등)**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4조)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